

※ [금융지주회사법(金融控股公司法)]의 주요 내용

금융지주회사법 금융기구의 종합적인 경영 효율을 발휘하고 금융의 업종을 뛰어넘어 경영하는 합병 감리를 강화하며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. 이 법의 주관기관은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(行政院金融監督管理委員會)이다.

금융기구가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영업양도의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고 타회사가 신설회사인 경우 금융기구의 주주회 회의는 타회사의 발기인 회의로 간주하며 동시에 타회사의 이사, 감찰인을 선거할 수 있고 역시 회사법 제128조에서 제139조, 제141조에서 제1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금융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주식전환 방식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고 금융기구가 타회사와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전환을 실시할 시 예정된 금융지주회사가 기존 회사인 경우 같은 금융기구와 같은 기존 회사의 이사회는 마땅히 전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금융기구는 마땅히 100%의 주식을 전환하여야 한다.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90% 이상의 기발행 증권을 소유한 타회사를 흡수 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회사의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이사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으며 회사법 제 316조의 주주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피분할회사와 타 자회사가 전 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 분할을 처리 시 타 자회사가 기존 회사인 경우 피분할회사와 타 자회사의 이사회는 마땅히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, 은행업, 채권금융업, 신용카드업, 신탁업, 보험업, 증권업, 선물업, 창업투자사업,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투자하는 외국 금융기구 및 그 밖의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금융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할

수 있다.

금융지주회사는 마땅히 내부통제 및 심사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은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기한 내에 관련 재무제표, 거래정보 또는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아울러 수시로 인원을 파견하거나 적당한 기구에 위탁하여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업무, 재무 및 그 밖의 관련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.